

#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

-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!  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!  
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 입니다.
-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 
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 
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 
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 
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(안) 등  
총5건의 안건에 대하여

○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 
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,  
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 
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○ 첫 번째,  
“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(안)”에  
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안건은 백현 제3극공립어린이집 신축, 수정청소년수련  
관 시설개선,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, 수내도서관 건  
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「성남시 공유재산 관  
리 조례」 제11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  
으로

‘백현 제3극공어린이집 신축’ 등 3건은 “가결”하였고,  
‘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’건은 도시  
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 
“부결”하였습니다.

○ 두 번째,

“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안건은 신중년 세대의 기술과 노하우 사회 공헌, 인생 재설계 준비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코자 하는 “조례안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

○ 안 제2조제2호 중

“위한 준비 및”을 “준비하고”로

○ 안 제4조제2항 중 “실시하고”를 “실시하고,”로

○ 안 제5조제2항 중

“사업대상연령”을 “사업대상 연령”으로

○ 안 제6조 중

“이하“시설”이라”를 “이하 “시설”이라”로

○ 안 제7조제1항 중

“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”을 “비영리법인 등”으로

○ 안 제7조제2항 중

“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”을

“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

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”로

제4항 중

“시설장은”을 “위탁받은 시설의 장은”으로,

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”를 “결산보고서는”으로

○ 안 제9조제1항 중

“구성하고”를 “구성하고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”으로

“위원수의”를 “위원 수의”로

“하여야한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

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

“관련실·극장”을 “담당 극장”으로

“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호선”을 “선출”로

○ 안 제10조제1항 중 “하되”를 “하며”로

제2항 중 “직 에”를 “직에”로

○ 안 제11조 중 “해촉”을 “해촉(解囑)”으로

“제1호”는 “삭제”하고,

“제2호부터 제5호까지”를 “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로

○ 안 제12조제2항 중

“본인 또는 관계인의”를 “관계인의”로

○ 안 제12조제3항 중

“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

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”를 “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”로

○ 안 제13조제3항 중 “인정하면”을 “인정하는 경우에는”으로 “수정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세 번째,

“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안건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「가치가게」 민간위탁을 위해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 “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네 번째,

“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.

본 안건은 첨단산업정책 자문단 구성, 운영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참고하여

○ 제8조의2 중

“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20명 이내의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”를

“각 분야별로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 할 수 있으며, 해당 분야별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”로

○ 제8조제3항 중 “특정성별”을 “특정 성별”로 “수정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다섯 번째,

“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

본 안건은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되어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가 변경되어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

“원안가결”하였습니다.

-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 
우리 위원회에서  
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 
보고한 “안” 대로  
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,  
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

**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 광 환**